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지원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147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총괄 검토의견	2
IV. 법안별 검토의견	4
1. 제재 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	4
2.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 정비	16
3. 행정기본법에 따른 행정상 강제 의제 조항 정비	19

I. 제안경위

2024년 9월 20일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지원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2024년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Ⅲ. 총괄 검토의견

- 「행정기본법」은 종래 행정법 분야의 집행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개별법마다 유사한 제도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주요 행정법 제도에 관한 통일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2021. 3.)되었음.
- 그런데, 일부 법률의 경우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규정하는 등 동 법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법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행정기관과 국민의 법 이해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①「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②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원칙적으로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③강제조치 시 「행정기본법」상 계고·통지, 이유 고지 등이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 8건의 일괄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법률의 적용 관계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법률안 정비 주요내용

연번	유형	법률안	주요내용	
1	①	수산물식품산업법	「행정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기준 상한을 법률에 규정	수산물식품에 대하여 표시의 사용정지·판매정지 등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한(1년 이내)을 법률에 명시
2	①	수산업법		어업의 정지, 입어의 정지 및 신고어업의 정지 등 제재처분에 대하여 그 상한(6개월 이내)을 법률에 명시
3	①	어선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한 제재처분(업무대행의 정지)의 상한(6개월)을 법률에 명시
4	①	항만재개발법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할 수 있는 공사중지처분에 대하여 그 상한(6개월 이내)을 법률에 명시
5	①	항만법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제재처분(공사중지, 시설장비 사용중지) 상한(6개월)을 법률에 명시
6	②	어촌특화발전법	어촌특화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한 별도 규정 외에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	
7	③	해상교통안전법	행정상 강제 사항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	항행장애물의 표시, 항행장애물 제거 등 행정상 강제 사항에 대해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명시
8	③	해양심층수법	제33조 또는 제33조	해양심층수개발업 등의 영업장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사항에 대해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명시

IV. 법안별 검토의견

1. 제재 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

(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 제1조)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물식품에 대하여 표시의 사용정지·판매정지 등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한(1년 이내)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수산물인증기준을 받은 수산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수산식품의 생산이나 수산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 <u>후단 신설</u> >	제35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 ----- ----- ----- ----- ----- ----- ----- ----- ----- ----- . 이 경우 표시의 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기간은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물식품이 사후 조사 또는 시험의뢰 결과 인증기준이나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수산물식품의 생산이나 수산물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간의 상한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 제47조¹⁾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하위법령에 규정된 제재조치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그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행정기본법」 제22조에 부합하는 취지로 보임.

[표] 관계 조문 정리

구 분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표시변경 명령 등의 처분기준)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물식품에 대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행정기본법」의 일반법·기본법적 지위를 고려할 때, 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일괄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2조)

-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어자 등에게 명할 수 있는 어업의 정지, 입어의 정지 및 신고어업의 정지 등 제재처분에 대하여 그 상한(6개월 이내)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및 제48조제7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입어 등의 제한) ① ~ ③ (생 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 자나 입어자가 제2항의 협의 또 는 제91조제2항에 따른 재결을 위반하거나 입어자가 제3항에 따 른 제한·조건 또는 정지를 위반 하면 그 면허한 어업을 <u>제한·정 지하거나</u>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 어를 <u>제한·정지 또는</u> 금지할 수 있다.	제39조(입어 등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제한 또는 6</u> <u>개월의 범위에서 정지하거나 --</u> <u>- 제한,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u> <u>또는</u> -----.
제48조(신고어업) ① ~ ⑥ (생	제48조(신고어업) ① ~ ⑥ (현행

략)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u>정지</u>할 수 있다. ⑧·⑨ (생략)	과 같음) ⑦ ----- ----- ----- ----- 6개 <u>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u>----- -----. ⑧·⑨ (현행과 같음)
--	--

- ☐ 현행법은 어업권자나 입어자, 신고어업자 등이 법령상의 조건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면허한 어업 또는 입어의 정지나 신고어업의 정지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상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 이에 개정안은 제재처분의 상한(6개월 이내)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그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행정기본법」 제22조에 부합하는 취지로 보임.
-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행정기본법」의 일반법·기본법적 지위를 고려할 때, 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일괄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3조)

- 개정안은 어선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한 제재처분(업무대행의 정지)의 상한(6개월)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8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 ⑦ (생략)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 현행법 제41조에 따르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게 어선의 검사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대행을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16조의2²⁾에서 제재처분의 상한(6개월)을 규정하고 있음.

2) 「어선법 시행령」

제16조의2(대행업무의 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8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 이에 개정안은 제재처분의 상한(6개월 이내)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그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행정기본법」 제22조에 부합하는 취지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행정기본법」의 일반법·기본법적 지위를 고려할 때, 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일괄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 제5조)

-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할 수 있는 공사중지처분에 대하여 그 상한(6개월 이내)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변경 <u>또는 6개월 이내의 중지</u> -----

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

-----.

1. ~ 7. (현행과 같음)

③ -----
--- 변경·중지-----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

----- 변경 또는 6개월 이내의 중지-----

-----.
-----.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공사의 <u>중지·변경</u>,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u>중지·변경</u>,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위반한 자 3. (생략)	② ----- ----- <u>변경·중지</u>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벌칙) ----- ----- ----- -----. 1. (현행과 같음) 2. ----- ----- <u>변경·중지</u> ----- ----- ----- ----- ----- 3.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 제15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등 잘못이 있을 때에는 공사중지 등 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해 흠이 있는 때에도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중지를 명하는 등 제재를 할 수 있으나,

공사의 중지라는 제재처분에 대한 상한을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³⁾하고 있어 「행정기본법」 제22조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제재처분의 상한(6개월 이내)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그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행정기본법」 제22조에 부합하는 취지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행정기본법」의 일반법·기본법적 지위를 고려할 때, 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일괄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6조)

□ 개정안은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제재처분(공사중지, 시설장비 사용중지) 상한(6개월)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

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u>중지·변경</u> ,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u>시설장비</u>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 ----- ----- ----- ----- <u>변경 또는 6개월 이내의 중지</u> ----- ----- <u>6개월 이내의 시설장비</u>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u>중지·변경</u> ,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u>시설장비</u>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 ----- <u>변경·중지</u> -----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제110조(벌칙) ----- -----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83조제1항 및 제84조에 따른 공사의 <u>중지·변경</u> ,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 또는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7. ----- ----- <u>변경·중지</u> ----- ----- ----- -----
8.·9. (생략)	8.·9.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83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받거나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하는 등의 흠이 있는 때에는 공사의 중지나 시설장비의 사용중지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음.

다만, 이와 같은 제재의 상한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규정⁴⁾하고 있어 「행정기본법」 제22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 공사 중지 등 제재처분의 상한(6개월)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기본법」 제22조에 부합하는 취지로 보임.

4) 「항만법 시행규칙」

제39조(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83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행정기본법」의 일반법·기본법적 지위를 고려할 때, 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일괄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 정비

(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4조)

- ☐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어촌특화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별도규정 외에는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제3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이행강제금) ① (생략)	제39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u>제38조제2항 및 제3항</u> 을 준용한다.	② ----- <u>제38조제3항</u> -----.
<u><신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 현행법 제3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사용 수익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한 후에도 불법 상태가 계속될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과징금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현재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지켜야 할 계고, 통지, 중지 등 절차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고, 제6항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의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표] 관계 조문 정리

구 분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구 분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이에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시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⁵⁾ 외에는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두 법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개별 법률 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과징금) ①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금액, 수납기관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행정기본법에 따른 행정상 강제 의제 조항 정비

(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7조)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항행장애물의 표시 또는 제거 등 행정상 강제조치를 함에 있어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및 제27조제5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항행장애물의 표시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25조(항행장애물의 표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3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u>
제27조(항행장애물 제거)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27조(항행장애물 제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3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u>

- 현행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 제거책임자에게 항행장애물의 표시 또는 제거를 명할 수 있고, 책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급히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표시 또는 제거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강제조치에 대해 「행정기본법」 제32조의 직접 강제 또는 제33조의 즉시강제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 행정상 강제조치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상 계고·통지나 이유 고지 등의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를 통해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관계 조문 정리

구 분
「행정기본법」 제32조(직접강제)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3조(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책임자는 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공고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에도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

(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 제8조)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양심층수개발업 등의 영업장에 대한 폐쇄조치를 하려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2조의 직접강제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폐쇄조치 등) ①·② (생략) ③ <u>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쇄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쇄조치의 일시·장소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 등을 미리 해당 영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u> ④ <u>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u>	제46조(폐쇄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u> <u><삭 제></u>

- 현행법 제46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무면허영업을 한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등에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 폐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위한 사전 통지나 관련 공무원의 증표 제시 등의 절차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영업장 폐쇄는 행정상 직접강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행정기본법」 제32조에 행정상 직접강제를 위한 계고, 통지 및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현행법 제46조의 절차는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영업장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개별법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절차에 적용되는 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행정기본법」의 일반법·기본법적 지위를 고려할 때, 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일괄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18